



1998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 요령 공고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8조 및 '98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15호, '98. 3. 21)에 의거 『1998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3. 23.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1998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 요령

1. 부문별 지원규모

지원부문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신기술보급
지원규모	25억원	45억원	30억원

2. 용자대상

아래 각호에 소속된 자로서 시설개체, 설비 자동화, 공정표준화, 제품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업

- 1) 생산성향상 : 용접 산업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
- 2) 고부가가치화 : 자기상표 및 디자인개발

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조명기기 관련업체

- 3) 신기술보급 : 정부에서 인증한 EM, NT 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전기분야 특허·실용신안 취득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3. 용자조건

◎ 현물담보의 경우

용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용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8.5%	생산성향상 및 신기술 보급 :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고부가가치화 :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공정설치비 -제품개발비(생산성향상은 제외)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자금

※ 운전자금 : 지원액의 30%이내이며, 고부가가치화사업은 전액 운전자금 지원 가능

◎ 기술담보의 경우

용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용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9.0%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현물담보의 경우와 동일

* 기술담보 용자대상은 각 해당사업의 용자대상에 속하는 기업

* 기술담보 신청 및 접수문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담보실 Tel. (02) 8298-723/5

4. 용자취급은행

관리은행과 산업기반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수협, 축협,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5. 용자신청

가. 신청기한 : 1998. 4. 1~4. 15 (15일간)

나. 신청서류

-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본회 소정양식) 1부
-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3) 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 5) 구입시설품목 견적서 1부

* 구비서류중 4, 5호는 해당업체에 한함.

다. 신청시 유의사항

- 1) 우편접수시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2)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기한

기금을 용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용자사업자” 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 조치가 없는 한 확정통보후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 납부

용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목적외 사용금지

용자사업자는 그 용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구분계리

용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 하여야 한다.

마. 보고 의무

용자사업자는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제21조에 정하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5 대경빌딩 9층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진흥부 진흥과
Tel : (02) 3476-0271/4

Fax : (02) 3476-0275

※ PC통신 안내 :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

- 천리안 : Go pdswp → 7. 기타 워드프로 세스관련 / 문서 ⇒ 제목
- 유니텔 : 접속 → 21. 자료센터 → 42. 공개자료실 → 21. 일반자료 → 5. 정치 / 경제 ⇒ 제목

* 제목은 “전기진흥회 신청서” 이며, 3. 26일 이후 이용 가능